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권익지원센터 업무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추가〉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6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권익지원센터 업무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추가	3

I. 개요

1.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46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4. 21.
- (3) 회 부 일 : 2026. 4.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202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권익 침해 신고 직종 중 사회복지사가 7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침해 유형으로는 일터 괴롭힘이 70.6%에 달하며, 그 중 직장 내 괴롭힘이 59.9%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회복지종사자는 직장 내부 위계 구조로 인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권익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지중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 환경의 조성
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4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권익지원센터 업무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생략)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③·④ (생략)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등이 있음¹⁾.

이 중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권익지원센터 상담 실적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4년	2025년	총계
① 접수		63	437	500
②서비스 제공	일반 상담(건)	63	312	375
	전문 연계 등	53	341	394
	노무	17	50	67
	법률	10	32	42
	심리	26	259	285

자료: 보건복지부

□ 권익지원센터의 202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권익 침해 사안을 의뢰한 종사자 262명의 직종은 사회복지사가 7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권익 침해 유형으로는 일터 괴롭힘이 7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59.9%로 나타났음.

권익 침해의 주 행위자는 상사(기관장, 법인 등)가 7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권익 침해가 주로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종사자가 겪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설 내부의 권익 침해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권익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3조의3제2항²⁾에 따르면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사 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고,

제4호의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개정안의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권익지원센터의 정책 제안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권익침해 사례의 조사·연구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며,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의 근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할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설치되어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운영 중이고, 권익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이미 소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행 업무에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건의’를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있는지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찬성함. 다만,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을 넘어 정책 연구 및 법률 분석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나, 현재 센터의 예산과 인력 구조로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동의하며,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개발에 협력하겠음.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사회복지중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요
-------------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사회복지중사자의 권익 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의3(사회복지중사자 권익지원센터)
- (설치) 중앙 1개소('24.9.24 개소), 한국사회복지사업협회 수탁(~'28.12월)
 - (조직 및 인력) 센터장, 2팀 4명(종합상담팀 2, 교육 및 운영지원팀 2)
 - (주요업무) ▲권익침해 상담·지원, ▲교육·홍보, ▲권익침해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예산 : ('25) 584백만원 → ('26) 613백만원(+29백만원)

* '26년도 인력 1명 증원 반영 : ('25년) 5명 → ('26년) 6명

□ 상담 현황 [24년 9월 ~ 25년 12월]

(단위 : 건)

구분		2024년	2025년	총계
① 접수		63	437	500
②서비스 제공	일반 상담(건)	63	312	375
	전문 연계 등 (건, A+B+C)	53	341	394
	노무 (A)	17	50	67
	법률 (B)	10	32	42
	심리 (C)	26	259	285

* 일터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및 이용자의 괴롭힘 등 포함

** 성희롱 및 성폭력 등 : 신체접촉, 신체노출 등을 포함

□ 주요 대응 사례

구분	내용	권익지원센터 지원내용	최종 결과
폭언 및 욕설	상사가 다수의 직원이 회의 중인 곳에서 반복적인 폭언 및 모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안내 ▲ 전문상담(노무법률심리) 지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지방노동청) ▲ 신청인은 병가 승인
휴가 사용 제제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 하였으나 반려 처분 인력 부족 이유로 육아단축근로 제지	▲ 노무 전문상담 지원 - 법률에 따른 권리 설명 및 기관 내 대응방안 안내	▲ 병가 승인 및 육아단축 근로 사용 중